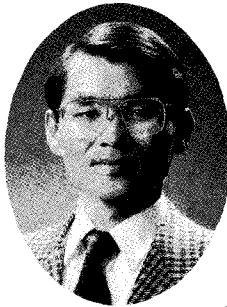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의 발전방향

1. 서언



손인옥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전체 세계경제가 하나의 경제단위가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각 부문에 걸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이자 다시 각 부문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됨으로써 이들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어쨌든 작금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지구촌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어느 한 나라에서의 경제활동은 다른 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경쟁법 운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기준이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은 기업측에서 보면 세계화라는 새로이 변한 사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경쟁당국으로서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만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기업결합심사체

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무작정 과거의 심사기준이나 판단요소를 버리는 것은 자칫 경쟁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당국은 새로운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업결합심사를 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계속 유지되고 따라서 소비자의 효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결합의 측면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기업결합의 심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여야 할 것인지 그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세계화의 진전과 기업결합의 증가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져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최근 몇십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95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는 구주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최근에는 유럽연합으로 확대·발전되었으며 며지 않아 경제의 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의 통합으로까지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국가경제의 개념이 점차 퇴색되고 있고 유럽단위의 경제정책이나 기업활동이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전후(戰後)의 GATT체제로 그 이념은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1) 본고에서는 세계화의 여러 측면 중 경제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함.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이동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없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야 외국기업과 경쟁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이제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체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

낮추고 상품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었으며, 1995년에 WTO가 출범함으로써 세계화의 속도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과거의 세계화는 몇몇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하면, 최근의 세계화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국제적 조직이 의도적으로 추진하여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원동력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이동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없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야 외국기업과 경쟁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이제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체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우리 기업도 과거에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이제는 해외시장에 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생존해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무한경쟁이 바로 세계화의 시대의 기업이 맞고 있는 새로운 환경이다.

기업은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발전하기 위하여 각자의 경영전략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전략의 결과로 이루어진 기업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국적 기업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²⁾ 다국적 기업이 확대되는 이유는 세계시장에서 가장 생산비가 적게 드는

곳에서 생산하여 이를 전세계시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첨경이었기 때문이며 과거의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은 이제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또는 무국적 기업(stateless corporation)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 있어서 세계화의 과정은 M&A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다국적화되고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해외진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은 현지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 또는 현지의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대형화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경쟁의 격화 외에도 90년대에 들어 기업경영이념이 80년대의 업종다양화(Diversification)에서 90년대에는 주력업종으로의 단순화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³⁾ 독일의 Daimler-Benz 그룹의 경우 80년대에는 자동차, 기계, 항공기, 금융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신규진출을 도모하여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양화된 기술 콘체른”이었으나 90년대에는 가전회사 AEG의 매각 등 업종의 단순화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기업결합의 증대 추세는 특히 1993년 이후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바, 1998년의 기업결합은 금액을 기준으로 3조달러를 넘어섰다.⁴⁾ ’98년도 기업결합 중 규모면에서 10대 기업결합에 드는 것은 다음 표와 같다.

2)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1995, 나남출판, PP. 76~83 참조

3) 이 주장은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인 Karel Van Miert가 베를린 국제카르텔회의(1999.5)에 참석하여 행한 주제발표 내용의 일부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시장을 넓게 확정할수록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약해지기 때문에 언제나 관련시장의 범위를 넓히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화와 관련해 기업의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세계시장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쟁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 1998년도 세계 10대 기업결합 >

당사기업	업종	금액(억불)
Exxon-Mobil(미국)	석유화학	800
Travelers group-Citicorp(미국)	금융서비스	700
SBC-Ameritec(미국)	통신	620
Bank America-Nations Bank	은행업	600
Bell-GTE(미국)	통신	528
AT&T-Telecom(미국)	통신	480
BP-Amoco(미국)	석유화학	480
Daimler Benz-Chrysler(독일-미국)	자동차	380
PFP-Petrofina(불란서-벨지움)	석유화학	129
Deutsche Bank-Bank Trust(독일)	은행업	101

한편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결합은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4년과 1995년은 기업 결합건수의 증가율은 각각 58.5%, 66.7%를 기록하여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3. 세계화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의 변화 방향

가. 지리적 관련시장의 확대 문제

기업은 세계화를 맞아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세계시장을 전제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경쟁상대는 국내업체만이 아니라 외국업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지리적 관련시장의 범위를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시장을 넓게 확정할

수록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약해지기 때문에 언제나 관련시장의 범위를 넓히도록 주장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⁴⁾ 그러나 세계화와 관련한 기업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쟁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관련시장의 확정은 수요자의 선택가능성이 어느 범위까지 넓혀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있으나 외국기업은 국내에 진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내의 소비자들은 선택범위가 국내기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 국내기업(기업총에서 보면 세계화되어 있는 기업)이 결합하여 시장의 집중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합은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국내시장에 이미 많은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있고 소비자들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경우 그 기업결합의 시장집중도는 이들 외국기업까지 포함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예에서 지리적 관련시장은 모두 국내시장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해 있고 그들의 경쟁상대가 세계기업이라고 해서 당해 기업과 관련된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지리적 관련시장이 세계시장이 되는 경우는 소비자들이 국내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시장에서도 상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 예로서 흔히 항공기 시장을 든다. 항공기는 수요자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같

4) 한국은행 조사부 해외조사실, 세계 M&A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1999.4.

5) 독일연방카르텔청 청장인 Dieter Wolf가 독일 Ulm대학에서 1999.1.29. 강의한 내용임.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시장에는 외국사업자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물론 외국기업의 점유율을 고려해야 한다.

은 항공사이며 이들 수요자는 항공기라는 상품을 세계적으로 2개밖에 안되는 항공사, 즉 미국의 보잉이나 유럽의 에어버스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항공기는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도 조선, 원유 등을 들 수 있다.⁶⁾

나. 상품시장의 획정 문제

지구촌 경제, 즉 경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상품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상품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는 수요의 대체성이 있는지가 가장 큰 고려요소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정 상품이 시장에서 품절이 되었을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수요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품시장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와 상품시장의 획정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세계화는 상품시장의 획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국민들이 세계여행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고 대부분 국내에서만 휴가를 보냈다. 그러나 국외여행에 관한 법적 규제가 풀리고 소득수준도 높아져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혼여행이나 휴가여행을 곧잘 외국으로 다녀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이제는 거의 모든 여행사가 국내여행상품만이 아니라 외국여행상품을 같이 취

급하고 있으며 가격에 있어서도 제주도의 여행비보다 더싼 동남아 여행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관련시장으로 보면 과거의 국내여행시장과 해외여행시장이 구분되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여행시장으로 통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과거에는 국내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와 해외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결합할 경우 혼합결합으로 인정되던 것이 지금은 수평결합으로 보아 경쟁제한성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게 된 것이다.

다. 시장점유율의 문제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시장에는 외국사업자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물론 외국기업의 점유율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이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상들을 통하여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국내기업이 3개사밖에 없고 이 3개사가 하나로 결합하는 경우에도 만일 3개사를 합하여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3개사의 결합은 승인될 수 있다. 실제로 요즈음의 기업결합 실례를 보면 국내업체가 단일화되거나 수입의 비중이 커서 그 결합이 승인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라. 신규진입의 가능성 검토

6) Dieter Wolf는 1999년 5월에 개최된 베를린 국제카르텔회의에서 또 다른 예로서 고급기술이 필요없는 중급의 철강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유럽연합 시장이 된다는 예를 제시하였음.

신규진입은 과거 세계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국내사업자의 신규진출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외국사업자의 국내진출에 관하여 국내법상의 제한이 대부분 철폐되었기 때문에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따질 때도 당연히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가능성을 고려해야

신규진입은 과거 세계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국내사업자의 신규진출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였다. 이제는 외국사업자의 국내진출에 관하여 국내법상의 제한이 대부분 철폐되었기 때문에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따질 때도 당연히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⁷⁾. 예컨대 국내기업이 결합함으로써 점유율상으로는 50%가 넘는 경우에도 그 결합이 무조건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국내에서 관련제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즉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면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결합은 승인될 수 있다.

외국기업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관세율이 있다. 관세율이 높아 수입품의 국내가격경쟁력이 미약한 경우 신규진입의 가능성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물론 관세율이 가까운 시일내에 인하될 계획이 이미 발표되어 있는 경우 신규진입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게 판정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입을 막는 일반적인 제한은 모두 없어졌으나 특별한 경우 개별법에서 외국기업의 진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법규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와 법규상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다르게 취급될 것이다. 제품의 성격도 신규진입 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될 경우가 있다. 예컨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시멘트나 운반에 어려운

위험물, 제품의 성질상 장기간의 보관이 어려운 화학제품 등은 수출입에 적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상품의 경우 외국사업자의 신규진입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될 것이다.⁸⁾

마. 공동행위의 가능성 검토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부수적인 요건으로서 공동행위 가능성 있다. 즉, 기업결합으로 인해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보다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에 따라 외국의 사업자가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만 있는 시장보다는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진입은 경쟁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그만큼 행동을 통일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의사소통은 국내기업만 있을 때보다 더 어렵다는 점, 법규의 준수의식에 관한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이 판단요소가 된다.

바. 가격인상의 가능성

세계화는 국내가격의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켜 준다. 같은 시장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도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보다 가격인상

7) '98년중 우리 나라는 외자도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시의 이사회승인제도 폐지, 의무적 공개매수제도 폐지,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 폐지 등 광범한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의 국내기업 매수에 관한 법규상의 제한이 모두 폐지되었음.

8) 예컨대 자동차의 도료로 쓰이는 충진제는 보관기간이 최장 6개월밖에 되지 않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음(Henkel사의 기업결합 건, 1999).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의 기업결합이 많아지고,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이라도 그 효과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능성이 더 적다. 그 이유는 국내사업자의 생산량 중 많은 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가격이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며 국내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당해기업의 수익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우 수출비중이 생산량의 9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주된 관심시장은 해외시장이며 국내시장은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서 매우 작은 비중만을 가질 것이다.⁹⁾

세계화가 국내가격을 올리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은 그 외에도 국제무역규범에서 덤핑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가격은 비싼데 수출가격이 낮을 경우 외국에서 덤핑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은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책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 예외인정 기준의 재검토

우리 기업이 세계화를 맞아 외국기업과 직접 경쟁하도록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완화론자는 주로 국제경쟁을 고려하여 예외인정의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한다.¹⁰⁾ 공정위는 금년초 법개정 시 예외인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종전

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기준을 폐지하고 효율성 증가와 부실기업과의 결합이라는 기준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예외인정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예외인정에 관한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국제경쟁의 격화라는 요소를 반영하기가 더 힘들게 되었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국제적인 판매망을 상호 이용할 수 있고 해외진출에 있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이는 효율성 증가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세계화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문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의 기업결합이 많아지고,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이라도 그 효과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경쟁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한다고 하며, 이들 각 국가의 경쟁법은 기업결합심사에 관하여 제각기 특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된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심사기준이 통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기업결합에 있어서 각국의 경쟁법을 모두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9)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1999.8)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수출비중이 크고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반덤핑 제소 가능성 등이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음.

10) 일본에서도 세계화를 맞아 합병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음. 일본경제신문, 1999.5.23.

기업결합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이 외국에 신고되어 심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세계화된 경제에서 우리 기업간의 결합이 외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위 “영향의 이론”에 따라 외국의 경쟁당국은 우리 기업의 결합이 자국법에 의한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있다. Daimler-Benz와 Chrysler의 결합에 있어서 양사는 전세계 40개국의 경쟁법을 검토하여 이 중 12개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¹¹⁾.

이러한 불편과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국제경쟁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보다는 WTO를 중심으로 한 경쟁정책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언젠가는 단일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TO의 경우 다분히 정치적인 기구이며 이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심사는 독립성이 약하거나 전문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유럽연합, 미국-일본의 경우와 같은 양자간 협정을 통한 문제해결방안도 나타나고 있다¹²⁾. 아직 우리 나라와 외국간의 양자협정 체결¹³⁾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나라의 이익이 국제관계에서 보장되려면 보다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제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기업결합신고양식의 통일이다. 이미 OECD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준양식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동 권고안에서 열거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신고서 양식을 점검·보완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3국은 이미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함

으로써 이들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5. 역외적용문제

기업결합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이 외국에 신고되어 심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¹⁴⁾. 세계화된 경제에서 우리 기업간의 결합이 외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위 “영향의 이론”에 따라 외국의 경쟁당국은 우리 기업의 결합이 자국법에 의한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에서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끼칠 때는 자국법이 적용됨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¹⁵⁾.

이에 반해 외국에서의 기업결합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의 법도 제7조1항은 “누구든지……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종 외국기업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도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 판단기준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법개정을 통하여 역외적용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명시적인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외적용을 위하여는 우리의 기업결합심

11) Juergen Schrempp 회장이 1999년 5월의 베를린 국제카르텔회의에서 밝힌 내용임.

12) 1967년에 이미 OECD 주관으로 국가간의 적극적 예양(Positive Community)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음. 적극적 예양이란 한 나라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에 동 기업결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13) 미국은 이미 독일(1976), 호주(1982), 캐나다(1984), 유럽연합(1991) 등과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그치지 않는 기업결합 추세와 그 규모의 거대화는 경쟁당국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는 더욱 강화되고 합리화되어야

사에 관한 제도를 다시 점검하여 외국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임원의 겸임은 현재는 한사람이라도 겸임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의 과반수나 대표이사의 겸임 등 실제로 다른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전신고의 경우 기업결합계약이나 이사회 의결일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에서처럼 이행행위가 있기 전이면 신고기한 위반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기업에 대하여 신고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현재의 상황을 보면 법적으로는 우리 법도 외국기업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에 대한 진출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합이 한국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컨대 보잉사와 맥더넬사의 합병은 한국의 항공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를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우리 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역외적용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 확보의 문제가 있다. 역외적용은 이를 어긴 외국기업에 대하여 확

실한 강제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신고기한을 어긴 기업들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도입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이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6. 결어

세계화는 경쟁법의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그 영향은 심대하다. 다른 경쟁사업자가 규모에 있어서 커지면 여타의 경쟁사업자들도 이에 대응하여야 하며, 그런 점에서 기업결합의 수나 규모는 향후에도 계속 늘어갈 것이다. 그치지 않는 기업결합 추세와 그 규모의 거대화는 경쟁당국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결합심사는 더욱 강화되고 합리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결합이 크게 증가하고 나아가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도 장차 우리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법제를 외국과 균형을 맞추고 국제화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결합이 자칫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결국 경쟁당국의 무용론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야 한다. **공정**

- 14) 1999년에도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 인수 건을 유럽연합에 신고하였으며, 현대전자는 LG반도체 인수 건을 미국 및 유럽연합에 신고한 바 있음.
- 15)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개정GWB) 제130조제2항은 “이 법은 이 법의 적용지역 밖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로서 이 법의 적용지역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